

1. 개정이유

페달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전
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제작사
상표 등화 설치기준 및 자동차 범퍼 안전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며,
자동차 길이 특례기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 설치기준 신설(안 제2조,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2, 별표7의10)
- 나.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 설치기준 신설(안 제2조, 제18조의7)
- 다. 제작사 상표 등화 설치기준 신설(안 제47조제3항)
- 라. 광원 시험 전압 오기 개정(안 별표6의21)
- 마. 자동차 범퍼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1의6)
- 바. 자동차 길이 특례기준 대상 추가(안 별표3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5호 및 제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에 의한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66.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란 구동축전지 잔여 수명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 및 화물·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동변속기 장착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초소형 자동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페달 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8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에는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의 정확도 확인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47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등록한 상표(이하 “제작자 상표”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자동차의 앞면·뒷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면의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하거나 중앙에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4,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2조, 제44조의2 중 해당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방향지시등과 결합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작자 상표 1개지만 사용할 것

다. 제작자 상표의 투영면(투과 또는 불투과 영역을 포함한다) 면적은 제작자 상표의 기준축 방향에서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제9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구조 및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10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1의 길이의 대상차종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기, 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65호,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별표 7의10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자동차 및 화물·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2. 제2조제66호, 제18조의7: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7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4. (현행과 같음) 65.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에 의한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66.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란 구동축전지 잔여 수명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 및 화물·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동변속기 장착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초소형 자동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신 설>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
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
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
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
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
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
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전기자동차 중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
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
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소형화물자동차(특수
용도형은 제외한다)에는 구동축
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동
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의 정
확도 확인기준에 적합해야 한
다.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략)

<신설>

---. -----
-----.

1. ~ 4. (현행과 같음)

5.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등록한 상표(이하
“제작자 상표”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
는 경우

가. 자동차의 앞면·뒷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면의 좌
·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하
거나 중앙에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
의2제2항, 제38조의4, 제39
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2조, 제44조
의2 중 해당 기준에 적합
할 것. 다만, 방향지시등과
결합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작자 상표 1가지만 사
용할 것

다. 제작자 상표의 투영면(투
과 또는 불투과 영역을 포
함한다) 면적은 제작자 상
표의 기준축 방향에서 100
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신 설>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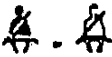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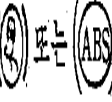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구조
및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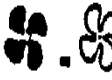
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제13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항목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기능	조명기준	식별색상
등화점등장치	점등 또는 Light		조종장치	-	-
			표시장치	설치필요	녹색
변환빔 전조등 자동표시기	-		조종장치	-	
			표시장치	설치필요	녹색
주행빔 전조등 자동표시기	-		조종장치	-	
			표시장치	설치필요	청색
적응형 주행빔 자동표시기	-	 또는 	조종장치	-	
			표시장치	설치필요	
전조등 세척장치 (별도의 조정장치 설치시)	-		조종장치	-	-
방향지시등 자동표시기	표시가능		조종장치	-	
			표시장치	설치필요	녹색
비상경고신호등 자동표시기	비상 또는 Hazard		조종장치	설치필요	
			표시장치	설치필요	적색
앞면안개등			조종장치	-	
			표시장치	설치필요	녹색
뒷면안개등			조종장치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연료량자동표시기	연료 또는 Fuel	 또는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연료계			지시장치	설치필요	-
오일압력자동표시기	오일 또는 oil		표시장치	설치필요	적색
오일압력계			지시장치	설치필요	-

항목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기능	조명기준	식별색상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온도 또는 Temp		표시장치	설치필요	적색
온도계			지시장치	설치필요	-
충전자동표시기	전압, 전류, 충전, Volts, Amp 또는 Charge		표시장치	설치필요	적색
전류계			지시장치	설치필요	-
앞면창유리창닦이기	창닦이기, Wiper 또는 Wipe		조종장치	설치필요	-
전동식창유리잠금장치		 또는 	조종장치	-	-
앞면창유리세정액분사장치	세정액, Washer 또는 Wash		조종장치	설치필요	-
앞면창유리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	창닦이기-세정액, Wash-wipe 또는 Washer-wiper		조종장치	설치필요	-
앞면창유리서리제거장치	서리제거, Defrost, Defog 또는 Def		조종장치	설치필요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뒷면창유리서리제거장치	뒷면서리제거, Rear Def, Rear Defrost, Rear Defog 또는 R-Def		조종장치	설치필요	-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차폭등	차폭등, Marker Lamps 또는 Mk Lps		조종장치	-	-
			표시장치	설치필요	녹색
주차등	Parking lamps		조종장치	-	-
			표시장치	설치필요	녹색

항목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기능	조명기준	식별색상
안전띠자동표시기	안전띠착용, fasten Belts 또는 Fasten Seat belts		표시장치	설치필요	적색
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			표시장치	설치필요	적색 또는 황색
측면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			표시장치	설치필요	적색 또는 황색
승객석에어백작동 정지장치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제동장치고장자동 표시기	제동, Brake		표시장치	설치필요	적색 또는 황색
ABS 고장자동표시기	자동제어 또는 ABS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속도계	km/h(MPH를 병기할 수 있음)	-	지시장치	설치필요	-
주차제동장치자동 표시기	주차, Parking		표시장치	설치필요	적색 또는 황색
경음기	경음기 또는 Horn		조종장치	-	-
원동기 고장자동표시기	Engine on-board diagnostics engine malfunction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경유 예열장치	Diesel pre-heat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수동초우크	초우크 또는 Choke		조종장치	-	-
			표시장치	설치가능	황색
냉방장치		 또는 A/C	조종장치	설치필요	
자동변속기변속단 수		PRND	지시장치	설치필요	-

항목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기능	조명기준	식별색상
원동기 시동	시동 또는 Engine Start		조종장치	-	-
원동기 정지	정지 또는 Engine Stop		조종장치	설치필요	
브레이크라이닝 마모상태자동표시 기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난방장치			조종장치	설치필요	-
냉·난방용 팬	팬 또는 Fan		조종장치	설치필요	-
전조등 높이조절장치		 또는  	조종장치	-	-
주행거리계	km 또는 (km 및 mile)	-	지시장치	설치필요	-
타이어공기압경고 장치 자동표시기	-	 또는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자동차안정성제어 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ESC	 또는 ESC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자동차안정성제어 장치 기능정지	ESC OFF	 OFF 또는 ESC OFF	조종장치	설치필요	
자동차안정성제어 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항목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기능	조명기준	식별색상
정속주행장치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표시장치	설치필요	
경제운전 표시장치		에코 또는 ECO	-	표시장치	설치필요	청색 또는 녹색
수소누출감지 자동표시기		수소누출, H2 또는 H2 Leak	-	표시장치	설치필요	적색
수소누출감지기 고장 자동표시기		수소센서, H2 또는 H2 Sensor	-	표시장치	설치필요	황색 또는 호박색
차로 이탈 경고 장치	기능정지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조종장치	설치필요	제작자가 정함
	차로 이탈경고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표시장치	-	제작자가 정함
	기능정지 자동표시기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표시장치	-	제작자가 정함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표시장치	-	황색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기능정지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조종장치	설치필요	제작자가 정함
	충돌 위험경고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표시장치	-	제작자가 정함
	기능정지 자동표시기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표시장치	-	제작자가 정함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표시장치	-	황색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표시장치	-	황색

주 : 1.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목의 조종장치를 제외한 기타의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오프위치에서 운전자가 식별표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가. 회전식 등화점등장치 및 회전식 전조등·후미등의 조종장치

나. 오프위치가 없는 회전식 조종장치

다. 경음기의 조종장치

2. 제작자등은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정속주행장치 및 냉·난방장치의 조종장치에는 기능을 조종하는 각 조종위치마다 식별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의 기능에 관하여 등급이나 정도를 조절하는 조종장치에는 양 끝의 조절위치에 그 등급이나 정도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도를 조절하는 조종장치의 양 끝의 조

절위치의 표시를 색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온도의 조절위치는 청색으로, 가장 높은 온도의 조절위치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계기판넬의 윗부분, 조향기둥, 차실바닥 및 바닥에 있는 콘솔부분에 설치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동기시동 및 원동기정지를 위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당해 조종장치들이 열쇠잠금장치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냉·난방용팬과 냉·난방장치에는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등화점등장치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종장치는 별도의 식별표시나 조명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등화점등장치를 작동시키면 계기판넬에 조명이 켜지는 경우 등화점등장치 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경제안전 표시장치의 경우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대하여 제작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9.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표시장치의 색상은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11. 자동표시기는 당해 자동표시기가 지시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비정상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동출발시의 등화점검의 경우 외에는 빛을 발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비상경고신호등의 표시장치로서 방향지시등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경고신호등의 식별부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13. 공기식 주제동장치의 제동장치고장 자동표시기의 경우 "제동공기 또는 Brake Air" 식별단어 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14.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와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기능고장 및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색상은 제12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와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설치대상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가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경우, 식별부호의 자동차 외형은 실제 외형을 더 잘 표시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 외형을 사용할 수 있다.
16. 하나의 표시장치로 2개 이상의 제동장치상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하나의 표시장치로 "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와 "측면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라는 표시를 사용해야 한다.
18. 공유구역에 의한 식별표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 다음의 표시장치(이하 "주요 표시장치"라 한다)에 대한 식별표시는 동일한 공유구역 내에 함께 표시할 수 없다.

1)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

2) 주행빔전조등자동표시기

3) 방향지시등자동표시기

4) 앞좌석안전띠자동표시기

나. 둘 이상의 표시장치가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주요 표시장치와 그 밖의 표시장치가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를 다른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보다 우선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1) 발생한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반복하여 표시

2) 운전자가 선택한 순서나 방법에 따라 표시

다. 공유구역에 표시된 식별표시 중 주요 표시장치가 아닌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9. 오일압력자동표시기와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는 동일한 식별표시로 표시할 수 있다.

20. 다음 각 목의 표시장치는 다른 색상으로 작동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변환빔전조등자동표시기

나. 오일압력자동표시기

다.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라. 충전자동표시기

마. 연료량자동표시기

바. 주행빔전조등자동표시기

사. 차폭등

아. 뒷좌석 안전띠자동표시기

자. 등화점등장치

21. 자동변속기 변속단수의 전진위치를 표시하는 문자는 추가 선택모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하면 제작자가 정한 영문자, 숫자 및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

(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

1. 필라멘트 광원

구분	형식	전력(W)	정격전압(V)	시험전압(V)
1	C5W	5	6	6.75
			12	13.5
			24	28.0
2	C21W	21	12	13.5
3	H1	55	6	6.3
			12	13.2
		70	24	28.0
4	H3	55	6	6.3
			12	13.2
		70	24	28.0
5	H4	60	12	13.2
		55		
		75	24	28.0
		70		
6	H7	55	12	13.2
		70	24	28.0
7	H8, H8B	35	12	13.2
8	H9, H9B	65	12	13.2
		65	12	12.2
9	H10	42	12	13.2
10	H11, H11B	55	12	13.2
		70	24	28.0
11	H12	53	12	13.2
12	H13, H13A	55	12	13.2
		60		
13	H14	55	12	13.2
		60		
14	H15	15	12	13.2
		55		
		20	24	28.0
		60		
15	H16, H16B	19	12	13.2
16	H17	35	12	13.2
		35	12	13.2

17	H18	65	12	13.2
18	H19	60	12	13.2
		55	12	13.2
19	H20	70	12	13.2
20	H6W	6	12	13.5
	HY6W			
21	H10W/1	10	12	13.5
	HY10W			
22	H21W	21	12	13.5
		21	24	28
	HY21W	21	12	13.5
		21	24	28
23	H27W/1, H27W/2	27	12	13.5
24	HB3, HB3A	60	12	13.2
	HB3, HB3A(표준)	60	12	13.2
25	HB4, HB4A	51	12	13.2
26	HIR1	65	12	13.2
27	HIR2	55	12	13.2
28	HS1	35	6	6.3
		35		
		35	12	13.2
		35		
29	HS2	15	6	6.75
			12	13.5
30	HS5	35	12	13.2
		30		
31	HS5A	45	12	13.2
		40		
32	HS6	40	12	13.2
		35		
33	P13W, PW13W	13	12	13.5
34	P19W PS19W PW19W	19	12	13.5
	PY19W PSY19W PWY19W	19	12	13.5
	PR19W PSR19W PWR19W	19	12	13.5
35	P21W	21	6	6.75
			12	13.5
			24	28.0

36	P21/4W	21	12	13.5
		4		
		21	24	28.0
		4		
37	P21/5W	21	6	6.75
		5		
		21	12	13.5
		5		
		21	24	28.0
		5		
38	P24W PS24W PW24W	24	12	13.5
	PX24W PSX24W	24	12	13.5
	PY24W PSY24W PWY24W	24	12	13.5
	PR24W PSR24W PWR24W	24	12	13.5
39	P27W	27	12	13.5
40	P27/7W	27	12	13.5
		7		
41	PC16W PW16W	16	12	13.5
	PCY16W PWY16W	16	12	13.5
	PCR16W PWR16W	16	12	13.5
42	PR21W	21	12	13.5
			24	28.0
43	PR21/4W	21	12	13.5
		4		
		21	24	28.0
		4		
44	PR21/5W	21	12	13.5
		5		
		21	24	28.0
		5		
45	PR27/7W	27	12	13.5
		7		
46	PSX26W	26	12	13.5

47	PY21W	21	12	13.5
			24	28.0
48	PY21/5W	21	12	13.5
		5	12	13.5
49	PY27/7W	27	12	13.5
		7		
50	R2	45	6	6.3
		40		
		45	12	13.2
		40		
		55	24	28.0
		50		
51	R5W	5	6	6.75
			12	13.5
			24	28.0
	RR5W	5	12	13.5
			24	28.0
52	R10W	10	6	6.75
			12	13.5
			24	28.0
	RY10W		6	6.75
			12	13.5
			24	28.0
	RR10W		12	13.5
			24	28.0
53	S1	25	6	6.75
		25	12	13.5
	S2	35	6	6.3
		35	12	13.5
54	S3	15	6	6.75
			12	13.5
55	T1.4W	1.4	12	13.5
56	T4W	4	6	6.75
			12	13.5
			24	28.0
57	W2.3W	2.3	12	13.5
58	W3W	3	6	6.75
			12	13.5
			24	28.0
59	W5W	5	6	6.75

			12	13.5
			24	28.0
	WY5W	5	6	6.75
			12	13.5
			24	28.0
	WR5W	5	12	13.5
			24	28.0
60	W10W, WY10W	10	6	6.75
			12	13.5
61	W15/5W	15	12	13.5
		5		
62	W16W, WY16W	16	12	13.5
63	W21W	21	12	13.5
64	W21/5W	21	12	13.5
		5		
65	WP21W	21	12	13.5
	WPY21W			
66	WR21/5W	21	12	13.5
		5		
67	WT21W,	21	12	13.5
	WTY21W	21	24	28
68	WT21/7W,	21	12	13.5
		7	12	13.5
69	WY2.3W	2.3	12	13.5
70	WY21W	21	12	13.5

2. 가스방전식 광원

구분	형식	전력(W)	정격전압(V)	시험전압(V)
1	D1R	35	12	13.5
2	D2R			
3	D3R			
4	D4R			
5	D1S			
6	D2S			
7	D3S			
8	D4S			
9	D5S	25	12	13.2
			24	28
10	D6S	25	12	13.2
11	D8S	25	12	13.2
12	D8R	25	12	13.2
13	D9S	27	12	13.5

		35	12	13.5
--	--	----	----	------

3. LED 광원

구분	형식	전력(W)	정격전압(V)	시험전압(V)
1	LR1	0.75	12	13.5
		3.5	12	13.5
2	LW2	1	12	13.5
		4~12	12	13.5
3	LR3A	3	12	13.5
4	LR3B	3	12	13.5
5	LW3A	4	12	13.5
6	LW3B	4	12	13.5
7	LY3A	4	12	13.5
8	LY3B	4	12	13.5
9	LR4A	0.75	12	13.5
		3	12	13.5
10	LR4B	0.75	12	13.5
		3	12	13.5
11	LR5A	3	12	13.5
12	LR5B	3	12	13.5
13	LW5A	6	12	13.5
14	LW5B	6	12	13.5
15	LY5A	6	12	13.5
16	LY5B	6	12	13.5

4. 그 밖의 광원

구분	형식	전력(W)	정격전압(V)	시험전압(V)
1	1157	27	12	12.8
		8	12	14.0
2	1157NA	27	12	12.8
		8	12	14.0
3	1156	27	12	12.8
4	1156NA	27	12	12.8
5	2357	28	12	12.8
		8	12	14.0
6	2357NA	28	12	12.8
		8	12	14.0
7	P25/10W	25	24	28
		10	24	28
8	PY25/10W	25	24	28
		10	24	28
9	P25W	25	24	28

10	PY25W	25	24	28
11	R8W	8	12	13.5
12	R12W	12	24	28
13	194	3.8	12	<u>14.0</u>
14	168	5	12	<u>14.0</u>
15	921	18	12	<u>12.8</u>
16	7444NA	28	12	<u>12.8</u>
		8	12	<u>14.0</u>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4 관련)

1. 구조기준

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이를 운전자에 의한 페달 오조작 상황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할 것

- 1) 가속 페달 최대 조작 위치를 100%로 할 때 조작 위치 변화량이 70% 이상이며 해당 구간에서 초당 400% 이상의 평균속도로 가속 페달을 조작
- 2) 가속 페달 조작 위치가 90% 이상 도달

나.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달 오조작이 감지될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해야 하고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제한할 수 있을 것

다. 차량의 주행 방향을 전방 또는 후방으로 설정한 후, 주행 방향 1.0m~1.5m 사이에 장애물(자동차, 고정벽 등)이 위치한 상황에서 “가.”의 페달오조작 상황이 될 때 충돌방지 또는 완화를 위해 가속을 제한할 것

마.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작동 중 운전자가 기능을 해제하거나 전방의 장애물이 없어질 경우 작동이 중단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할 것

- 1)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작동이 중단될 경우, 갑작스러운 급가속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 2) 운전자에게 기능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운전자의 개입이 우선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

바. 차량 구동 후 6초가 지난 시점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 상태를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것

사.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24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적합할 것

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사용되는 “표시장치”은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 1)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2) 점등 시 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 후 주간·야간 주행조건에서 명확히 인식되도록 충분한 밝기를 갖춰야 할 것
- 3)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On”(또는 “Run”) 위치에 있을 때 또는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와 “START” 위치 사이에 있으며, 제작사가 점검 위치로 지정한 위치에 있을 때 표시장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 다만, 공유구역을 사용해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표시장치”의 점등 및 소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구 분	점등 여부	별표 2의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가) 제어신호, 센서 등의 전기적 고장과 센서 가림, 오정렬 등의 비전기적 고장이 감지되어 제2호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점등	지속점등 필수
단, 고장상황에서 자동차의 속도가 10km/h를 초과할 경우	소등	소등 가능
나)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달오조작이 감지되어 방지장치가 작동한 경우	점등	점멸 가능
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장기비활성화할 경우	점등	지속점등 가능

자. 고장감지 상황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고장 경고 신호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장이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별표2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를 사용하며 일정한 황색 시각 신호로 제공되어야 함
- 2) 악천후 등으로 인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고장 경고 신호를 운전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
- 3)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자체점검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없어야 하며 전기적으로 감지 가능한 고장의 경우 경고 신호를 점등하는 데 지연이 없어야 함. 그러나, 고장이 감지될 당시 차량 속도가 10km/h보다 큰 경우, 차량 속도가 10km/h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경고 신호를 억제할 수 있음
- 4) 비전기적 고장 조건이 감지된 경우에도 “카.”의 자동 비활성화 장치의 경고가 작동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운전자에게 고장 경고가 제공되어야 함
- 5) 정기 검사에서 고장 경고 신호 상태를 시각적으로 관찰하여 올바른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전 엔진 작동에서 고장이 존재했다면 고장 경고 신호는 계속 켜져 있어야 하며, 고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감지되면 제외함

차.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작동 경고 신호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 1) 작동 경고는 시각 신호로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물체 감지 시스템에서 촉각 또는 청각 신호를 사용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촉각 또는 청각 신호가 제공되어야 함

2) 작동 경고 신호는 "자. 1)"의 황색 시각 신호의 깜박임 신호일 수 있음
카.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정지 조종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활성화 기능별로 아래 "1)"에서 "3)"까지의 각 기준에 적합할 것

1) 단기 비활성화 장치 : 운전자가 수동으로 단기 비활성화할 경우 비활성화 시점에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할 것. 차량을 다시 시동(또는 시동 사이클 시작)할 때마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자동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 다만, 자동 엔진 시동(ISG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2) 장기 비활성화 장치 : 운전자가 수동으로 장기 비활성화할 경우 최소 2회 이상의 의도적인 동작으로 비활성화할 것. 엔진 시동 시마다 기능 활성화할 필요가 없으며, "가)" 또는 "나)" 방식 중 1개의 방식을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다만, 하나의 작동 방향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 방식을 적용할 것

가) 지속적인 시각 경고 신호를 통해 운전자에게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비활성화되었음을 알려야 함. "자. 1)"에 명시된 황색 시각 신호를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운전자에게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비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통보해야 함. 이 정보는 최소 10초 동안 또는 운전자가 확인할 때까지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한 7일 혹은 10번의 엔진 시동마다 제공되어야 함. 이는 자동 엔진 시동(ISG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정보는 "자. 1)"에 명시된 황색 시각 신호와 구별되어야 함

다) 장기 비활성화가 단 하나의 작동 방향(전진 또는 후진)에만 적용되는 경우, 엔진 시동 후 해당 주행 방향을 처음으로 선택할 때 지속적인 시각 경고를 주행 방향이 변경될 때까지 제공되어야 함

3) 자동 비활성화 장치 : 차량에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비활성화하는 수단이 장착된 경우 자동 비활성화로 이어지는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활성화 되어야 함. 또한 아래 기준을 만족할 것

가) 자동 비활성화할 경우 "자."의 고장 경고가 작동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활성화 시점에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할 것

나) 자동 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는 동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정지되거나 제어 방식이 조정될 수 있으나 최소 동일한 수준의 가속 억제 기능 제공을 보장해야 함

2. 성능기준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태에서 성능요건을 충족할 것

- 1) 피견인 차량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 2) 구동계가 정상 작동하는 상태
- 3) 경적차상태(운전자 1명 및 측정장비를 실은 상태)중량과 최대 허용 중량 사이의 차량 중량

나. 정지상태에서 출발할 때 전/후방 1.0m~1.5m 위치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충돌 속도는 페달 오조작 상황을 충족하는 지점의 차량 속도보다 8km/h 이상 높아서는 안 되며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충돌속도의 7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다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작동 없이 정지상태에서 가속하여 최대한 빠르게 1.5m 위치까지 도달하였을 때 속도가 8km/h 이하이며, 차량 중량 대비 출력이 낮아 30%의 감속이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최소 15% 이상 감속해야 할 것

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

구분		정면 충격	모서리 충격
시험 기준	진자 속도	4km/h	2.5km/h
	충격선 높이	445mm ※ 다만,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시한 충격선 높이를 적용한다.	
	진자 중량	차량중량	
	충격 방법	- 앞면 범퍼에 2회 충격 - 뒷면 범퍼에 2회 충격	- 앞면 범퍼의 좌측·우측 모서리에 각각 1회 충격 - 뒷면 범퍼의 좌측·우측 모서리에 각각 1회 충격
판정기준		1. 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비상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및 후부반사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다만, 전구의 필라멘트 파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험 후 승강구, 후드 및 트렁크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힐 것. 이 경우 승강구의 경우에는 충격시험 중 열려서는 아니된다. 3. 연료장치 및 냉각장치는 새거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이 경우 각종 마개 및 캡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나 닫힐 수 있어야 한다. 4. 배기장치의 손상이나 이탈이 없을 것 5. 동력장치, 현가장치(타이어를 포함한다),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다만,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한 센서, 카메라, 레이더 등의 장치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장치의 파손은 허용될 수 있다. ※ <삭제>	